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의무 준수〉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06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의무 준수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3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의무 준수

개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안 제14조의8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u> <u>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u> <u>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u> <u>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u>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6조(벌칙) -----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 3의2. (생 략) <u><신 설></u> <u>3의3.</u> (생 략) 4. ~ 19. (생 략)	----- -----.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14조의8을 위반하여 안전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3의4.</u> (현행 제3호의3과 같음) 4. ~ 19.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의5¹⁾).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차량 안전장치·보호장구·작업안전수칙 등 안전기준²⁾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은 ① 지방자치단체 직영, ② 지방자치단체 대행업체에만 한정됨.³⁾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차량 안전장치) 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보호장구) 안전화,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 지급 의무화

▲(작업안전수칙) 주간 작업, 3인 1조, 악천후 보호조치 등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과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업체는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2022년 기준 전체 5,61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중 4,597개⁴⁾(81.9%) 업체는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상황임.

[2022년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업체 현황]

구분	합계	지자체	민간업체*		
			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자
개소	5,615	186	910	2,662	1,857

* 민간업체 중 832개소는 지방자치단체 대행 업체로 법상 안전 기준이 적용됨
 자료 : 2022년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안전장치, 주민보호조치 및 작업인원 기준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안전기준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안전 기준 적용 대상은 지자체 직영 업체(186개) + 지자체 대행업체(832개) = 1,018개 업체

또한, 개정안은 안전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⁵⁾의 수위와 동일한바, 형평성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5)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